

용역도급계약서

계 약 번 호	제2017-011호		
계 약 명	시설물 안전 정기점검(17년상반기)		
계 약 금 액	금일억오천일백팔십만원정	₩151,800,000	
	* 공급가액 :		
	금일억삼천팔백만원정	₩138,000,000	
	* 부가가치세 :		
	금일천삼백팔십만원정	₩13,800,000	
계약 보증금	금이천이백칠십칠만원정	₩22,770,000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0.3%		
물가변동계약금액 지급방법			
계 약 기 간	2017. 03. 21. ~ 2017. 06. 30.		
준 공 년월일			
특 약 사 항			
하자담보책임 및 보증금율			
위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본 용역도급 계약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용역준공일일 내에 이 용역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2/ 일			
계 약 자	발 주 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궁 윤	
	상 호	(주)위드이앤오	
	주 소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서로11번길 27	
	대표자	이 주 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위드이앤오(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2017년 상반기 시설물 안정 정기점검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이행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에게 계약체결시 기재된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계약)보증 보험증권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형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증각서로서 갈음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 ① "발주자"가 제11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주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제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3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금액의 청구 및 지급)

-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액: : 일금일억삼천팔백만원(W138,000,000원/부가세 별도)
- ② 위 항 계약금액 청구 및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분기 준공금을 지급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 : 용역도급 계약서 및 과업시서에 따름

2.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① 천재지변, 전쟁, 사변, 소요, 폭동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발주자"가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경우

제6조 (용역내용의 변경)

1.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용역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경미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사항은 정기보고 외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발주자"에게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검사)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검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9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성과품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가산하여 매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액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사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제10조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이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등)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가 입은 손해가 제3조 제1항에서 명기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상회하는 등 더 이상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용역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내에 용역이 완료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자"가 전업,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5. 제3자가 "계약상대자"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여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천재지변, 전쟁, 사변, 소요, 폭동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
9. 기타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호의 사유로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의 청구가 있는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성과품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13조 (계약의 효력)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쌍방의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14조 (기타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고,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 과업지시서 1부.